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관리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작 성 자	이름	김연학
	담당부서 (과)	벤처투자과		직급	공업사무관
	국장	이은청		연락처	044-204-7711
	과장	이준희		이메일	kimyh6887@korea.kr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 제2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5.30~2023.07.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 시장 조성이 필수적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운용 근거를 마련								
	7.규제내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최소 출자금 총액(1,000억원)과 분할 출자 시 최초 출자금액(200억원) 명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단독 운용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납입자본금(20억원 이상)과 상근 전문인력(2명 이상) 요건을 제시 - 출자 1좌 금액, 유한책임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존속기간 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 규제자</td><td>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을 등록하려는 자</td><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 규제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								
9.규제목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기준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기설정 제34조 -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0.08.12~2023.08.11 3년		
	13. 우선허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2. (생략)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다. (생략) 라.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 <u>단서 신설</u> >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 ----- ----- -----.
	1.·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 ----- ----- ----- ----- ----- ----- -----.
	다만, 벤처투자조합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4.·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출 것

④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1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
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
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
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
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
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
투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
8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
구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
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
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
로 하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
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u>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u> <u>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u> <u>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u>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운용 근거를 마련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법제화 추진 발표

* 관련 국정과제 :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③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 22. 11.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기재부, ' 22. 11. 4.)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내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최소 출자금 총액(1,000억원)과 분할 출자시 최초 출자금액(200억원) 명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단독 운용이 가능한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납입자본금(20억원 이상)과 상근 전문인력(2명 이상) 요건을 제시 • 출자 1좌 금액, 유한책임조합원 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존속기간 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는 조합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구체화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마련을 통해 소형 모펀드의 난립을 방지하고 다른 벤처투자조합 분산 출자를 통한 안정성·수익성 제고	등록기준 위반 시 처분을 위한 행정비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간담회 (협회·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증권사 등)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 5. 11.)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목표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 기준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 요건의 세부사항을 기존 운용 현황과 벤처투자조합의 기준을 참조하여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소형 모펀드의 난립 방지 및 효율적 분산 투자를 위해 출자금 총액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설정
 - * 벤처투자조합의 평균 규모(약 240억원, '21년), 자본시장법 상 사모투자재 간접펀드의 분산 투자 규제(동일 펀드에 20% 초과 투자 제한, 타 펀드 보유지분 최대 50%) 준용
 - * (예시) 1,000억원 = 600억원(240억원 규모 5개 자펀드를 대상으로 각각 출자지분 50% 취득) + 400억원(상장주식·해외투자·사모펀드 등)
- 분할납을 채택하는 대형 벤처투자조합(1,000억원 이상)이 통상 5회 분할 출자함을 고려, 최초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설정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단독 운용이 가능한 자산운용사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납입자본금 20억원, 상근 전문인력 2명으로 설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완화 또는 일몰기한을 설정해야 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재검토 대상 규제이므로 일괄하여 재검토 예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당없음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대형 벤처투자조합이 통상 5회 분할 출자하는 점을 고려, 최초 출자금은 200억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요건으로 단독운용 기준을 설정해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벤처투자법 일부개정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조합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관리 기준							
	2.규제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4항·제5항·제6항, 제37조의2, 제39조제3항, 제47조제3항							
	3.위임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4항, 제5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5.30~2023.07.1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 시장 조성이 필수적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운용 근거를 마련							
	7.규제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산정 시 해당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1인으로 산정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을 40%로 완화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비율을 60%로 지정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기관전용, 일반) 출자 허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자펀드(벤처투자조합) 운용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기준 30% 이내, 자펀드(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기준 10% 미만 범위에서 허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서류검사 사유에 포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자</td><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려는 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31개사, '22년) 신기술사업금융업자(156개사, '22년) 집합투자업자 (437개사, '22년)							

	9.규제목표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기준 마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설정	제37조의2	신규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재검토행	2023.10.19~2026.10.18	3년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생략)	제2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금액 또는 자본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 중인 총자산(자본금과 운용 중인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제외할 것	3. ----- ----- ----- ----- ----- -----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u><신설></u>	<u>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①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	3. ----- -----.

에 따라 산정한다.

가. ~ 다. (생략)

라. 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
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
액의 10퍼센트 미만을 출자
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
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의 출자
자를 각각 유한책임조합원 1
인으로 산정할 것 <단서 신
설>

4. 5. (생략)

<신 설>

<신 설>

_____.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다만, 벤처
투자조합이 민간재간접벤처
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임조
합원 1인으로 산정한다.

4.·5. (현행과 같음)

② 법 제6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00억원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법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납입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일

<신 설>

것

2. 제23조제7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는 것

④ 법 제63조의2제2항에서 “조합원의 범위,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인 것. 이 경우 유한책임조합원의 수는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71조의4제2항에 따른 자(같은 영 제10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서 제외할 것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10퍼센트 미만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

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
자기구의 출자자를 각각 조
합원 1인으로 하여 산정할
것.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
0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
모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가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유한책임조합원 1인으로 하
여 산정한다.

다. 모태조합 등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에
서 제외할 것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다른 벤처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미
만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
자한 벤처투자조합을 유한책
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하고,
10퍼센트 이상을 출자받은
경우에는 출자한 벤처투자조
합의 출자자를 각각 유한책
임조합원 1인으로 산정할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 ③ (생략)

④ 법 제5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단서 신설>

⑤ 법 제51조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2. (생략)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투자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것

가. ~ 다. (생략)

<신설>

4. ~ 6. (생략)

<신설>

<신설>

것

4.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다만, 민간재간
접벤처투자조합의 경우에는 40퍼
센트를 말한다.

⑤ -----

-----.

1. 2. (현행과 같음)

3.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4. ~ 6. (현행과 같음)

⑥ 법 제63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60퍼센트를 말한다.

제37조의2(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예외) 법 제63조의2제5항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달리 정하는 투자비율 및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생략)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 ② (생략)

행위제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5조제3항의 비율을 산정할 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은 제외한다.
 2. 제36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36조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있다.
 3. 제36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있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30퍼센트 이내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은 각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총수의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제39조(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보고와 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략) ③ 법 제7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u>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u> 후단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과 같음) ③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u> 후단 또는 <u>제63조의2제1항</u> - -----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운용 근거를 마련
- 민간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도입 및 법제화 추진 발표

* 관련 국정과제 : 32(예비 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③ 모태펀드 대폭 확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 (비상경제장관회의, ' 22. 11. 4.)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기재부, ' 22. 11. 4.)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 대안	대안명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관리 기준
	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운용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 조합의 출자금액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의무 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 산정 시 해당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1인으로 산정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을 40%로 완화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창업·벤처기업 투자의무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비율을 60%로 지정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동일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비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기관전용, 일반) 출자 허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자펀드(벤처투자조합) 운용을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기준 30% 이내, 자펀드(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기준 10% 미만 범위에서 허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중요 사항 변경등록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부·서류 검사 사유에 포함
--	--	---

○ 규제대안의 선택 근거

구분	장점	단점
규제 대안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 투자 의무 준수 여부 여부 등 검사를 위한 행정비용 발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관리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 이견 없음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업계간담회 (협회·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증권사 등)	벤처투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23.5.11)	이견 없음	해당 없음

3. 규제 목표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기준 마련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 요건의 세부사항을 기존 운용 현황과 벤처투자조합의 적용기준을 참조하여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자펀드(벤처투자조합) 출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벤처투자조합 LP 1인으로 산정
 - 수익성 중심의 자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 상장주식 보유제한비중 완화, 사모펀드·신기술조합 출자 허용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비율을 60%로 명시(종전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상향 입법)
 - 운용 편의를 위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의 자펀드 운용을 허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총액 기준 30% 이내, 자펀드 출자지분 기준 10% 미만)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완화 또는 일몰기한을 설정해야 하나, 개정안의 내용이 현행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24조, 제34조, 제35조에 따른 재검토 대상 규제이므로 일괄하여 재검토하고, 신설되는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일몰기한을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당없음

III.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 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 벤처투자조합의 유한책임조합원(49인 이하) 산정 시 해당 벤처투자 조합에 출자한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1인으로 산정함으로써 요건을 완화하고,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상장 법인 투자제한 비율을 40%로 완화하는 등 종전 벤처투자조합 운용 기준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거나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해산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합을 계속 하기 위해 신고서 제출 시 변경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하는 등 종전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준을 설정해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규제 집행에 별도 행정역량이 요구되지 않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동 시행령의 개정 이후 규제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

3. 종합결론

벤처투자법 일부개정에 따라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와 조합 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적절한 내용으로 동 규제를 적용함이 타당